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송지훈¹⁾, 정영모²⁾

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Ji-hoon Song¹⁾, Yeong-mo Jeong²⁾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취약계층, 교육복지, 교육기회, 초중등교육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statu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and providing constructive strategies for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collect data, we have used on-line survey, in-depth interview personnels in charge of 17 school districts and open forum with municipal board members of education along with related literature review. As results, since 2003,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has been proved and the areas have been expanded. Furthermore, institutional stability has been confirmed along with the supports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 and Ministry of Education Ordinances. However, sinc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project has transferred to 17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shows the

Received (August 31, 2017), Review Result (September 14, 2017)

Accepted (September 21,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¹04763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o-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psu.jihoonsong@gmail.com

²(Corresponding Author)04763 Institute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o-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st5067@hanmail.net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A02061908)

tendency of that the overall programs were not fully activated and gradually stagnated. According to these issues, we proposed various implemental policy suggestions th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8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related law.

Key Words :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education weakness class, education welfare, educational opportunit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결과상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학습 결손 예방과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 등도 함께 중시되고 있다.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2011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2].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참여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고[3], 자생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응투자 금액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4]. 이러한 성과 등에 기초하여 정부는 2010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을 제정하였다[5].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법적 기반 및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2011년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 제106호 제4조에서 사업학교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1년 이후 교육감이 주관하는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6][7]. 결과적으로 볼 때 2011년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상학교 선정 및 수혜대상 학생 선정 기준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8][9].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으로 마련되고, 특별교부금에 의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각 시도의 사업 운영현황을 상호 비교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사업 운영 방향

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최소화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사업을 표준화 하거나 전국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점차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때문에 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정책 수행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시도교육청 설문 문항에는 사업 담당부서, 업무 담당자 현황, 사업전문인력 배치교 현황,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설문 문항에는 교육청 기본현황, 사업담당자 현황, 교육지원청 예산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설문문항은 학교 기본현황,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운영현황, 장단기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자 현황, 사업 전문인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조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 집단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오프라인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설문지를 충분히 검토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통계자료,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운영계획서,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5개 교육청, 110개 교육지원청, 2,090개 학교가 2016년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운영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 유효한 응답을 한 시도교육청은 14개였다. 14개 시도교육청의 응답을 분석하여 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황, 사업운영학교 수, 사업 전담인력 배치 현황, 사업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였다.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3개이며, 나머지는 팀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담당자는 교육청별로 평균 3.5명이며, 일반직이 65.4%로 가장 많았고, 프로젝트조정자가 26.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문직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3,051개로 나타나 교육청 당 평균 218개 학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평균 100개(45.9%), 미 배치된 학교는 평균 118개(54.1%)로 조사되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배치된 학교보다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810억 원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663억 원 수준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4],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2012년까지의 통계자료만 제시되어 있어 이후 예산변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세출예산 결산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3년을 정점으로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221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0]. 예산이 감소한 2013년 이후 시 단위와 도 단위 교육청의 예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시 지역은 2013년 1,027억 원에서 2016년 728억 원으로 감소하고, 도 지역은 2013년 515억 원에서 2016년 494억 원으로 감소하여 시 지역의 예산 감소폭이 도 단위 지역보다 컸다. 이와 같은 예산 감소는 학생 수 감소가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나 학생 수 감소가 도 단위가 시 단위 보다 컸던 점[11]을 고려할 때 시 단위 지역의 예산 감소는 특이할 만한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201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세출결산 자료와 시도교육청 사업 운영학교 수를 조합하여 1교당 지원 가능한 금액을 조사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교당 지원 가능한 금액은 시 단위의 경우 1교당 평균 34,230천원이며, 도 단위의 경우 1교당 평균 53,365천원으로 나타나 도 단위 지역이 시 단위 지역에 비해 1교당 평균 19,136천원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사업운영계획서와 시도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에서 시도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발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지정방식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따른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우선지원대상 학생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학생 1인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형평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12]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 시도교육청 사업예산 및 사업운영 학교 수(2016년)

[Table 1] Office of Education budget and number of schools(2016년)

(단위 : 천원, 교)

구분	세출예산 (A)	사업전담인력 배치 학교 현황(사업학교 수)			1교당 지원 가능 금액 (A/B)
		배치교	미배치교	계(B)	
시 지역 평균	72,772,618	853	1,273	2,126	34,230
도 지역 평균	49,362,993	546	379	925	53,365
전체 평균	122,135,611	100	118	218	40,186

출처 : [13] 재구성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지원청별로 평균 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는 프로젝트 조정자가 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직이 30%, 전문직은 25%, 기타 10%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 조정자의 93.3%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일반교육학 전공자는 12.8%, 교과교육학 전공자는 14.1%로 조사되어 대부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았다. 교육지원청의 자체사업비 구성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이전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사업 운영비가 18.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민간이전사업이나 지역공동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과 도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시 지역은 민간이전사업에 전체 예산의 86.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사업 운영에 44.7%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이전사업에 19.5%, 연수에 13.9%, 컨설팅 및 평가에 10.5%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는 시 단위 지역의 경우 복지관련기관, 청소년 기관, 지역아동센터, 민간기관 및 단체 자원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한 반면 도 지역은 이러한 자원이 도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2,090개의 학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 학교의 학생 구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정 학생은 평균 46.5명, 차상위 계층은 12.2명, 다문화가정은 11.4명, 한부모가족은 9.0명, 특수교육대상자는 6.0명, 탈북학생은 0.5명이 재학 중이었다. 설문조사 응답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평균을 조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113명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인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수급권자 44.4명, 담임추천 36.2명, 차상위계층 12.3명, 한부모가족 7.9명, 다문화가정 7.8명, 특수교육대상자 4.0명, 탈북학생 0.3명으로 나타나 우선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의 대부분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수급권자 학생과 담임추천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추천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 등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사망, 실직, 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으로 담임이 추천하고 교육복지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 비율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수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표 2] 우선지원학생 수(2016년)

[Table 2] priority support number of students(2016년)

(단위 : 명)

지역	1교당 우선지원학생 수							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담임추천	
시 평균	45.0	7.7	11.6	0.3	7.0	4.0	35.3	111.0
도 평균	43.3	8.4	13.6	0.3	9.3	4.0	37.7	116.6
전체 평균	44.4	7.9	12.3	0.3	7.8	4.0	36.2	113.0

출처 : [13] 재구성

응답학교의 교복우 사업비 예산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88.9%로 가장 많고, 대응투자가 9.0%, 기타 예산이 2.1%를 차지하였다. 사업비의 사용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68.5%를 사용하며, 맞춤형 지원 활동에 6.4%, 시설자산 취득에 2.9%, 기타에 22.1%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18.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형 프로그램은 9.1개, 1개월 이상인 장기형 프로그램은 9.1개로 조사되어 장단기 프로그램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나누어 장단기프로그램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 지역은 단기형 프로그램 8.5개, 장기형 프로그램 7.7개로 단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도 지역은 단기형 프로그램 10.3개, 장기형 11.5개로 장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장단기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 내용을 조사한 결과, 문화체험(6.6개)과 심리정서프로그램(6.2개)이 전체 프로그램의 70.3%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2.3개, 12.6%). 학습프로그램이나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1개월 미만의 단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프로그램 구성(2016년)

[Table 3] Program composition(2016년)

(단위 : 명)

시·도		구분				계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기타	
단기형	프로그램 수 (비율)	0.7 (7.7)	4.4 (47.7)	2.7 (29.1)	1.4 (15.6)	9.1 (100)
장기형	프로그램 수 (비율)	1.6 (17.9)	2.2 (24.3)	3.5 (38.7)	1.7 (19.2)	9.1 (100)
계	프로그램 수 (비율)	2.3 (12.6)	6.6 (36.3)	6.2 (34.1)	3.1 (17.0)	18.2 (100)

출처 : [13] 재구성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구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학습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모두에서 교사의 참여비율이 48.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4.6%로 조사되어 교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학교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전문인력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표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54.1%에 달한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강사 구성(2016년)

[Table 4] Instructor composition(2016년)

(단위 : 명)

시·도		구분					계
		교사	사업 전문인력	외부강사	자원 봉사자	기타	
학습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3.8 (48.7)	0.6 (7.4)	1.7 (21.7)	1.5 (18.7)	0.3 (3.6)	7.9 (100)
문화체험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5.4 (54.4)	0.9 (9.6)	2.2 (22.3)	1 (10.4)	0.3 (3.4)	9.9 (100)
심리정서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6.4 (58.5)	1 (9.4)	2.3 (20.7)	0.8 (7.4)	0.4 (3.9)	10.9 (100)
기타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4.5 (55.0)	1 (12.4)	1 (11.8)	1.1 (12.9)	0.6 (7.9)	8.1 (100)
계	강사 수 (비율)	20.1 (54.6)	3.5 (9.5)	7.2 (19.6)	4.4 (12.0)	1.6 (4.3)	36.8 (100)

제도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규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관련법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

거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하고,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을 제정하면서 마련되었지만, 2016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가 개정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이 '경계선 지능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한정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에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39)로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습부진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 법안은 '학습부진 등'의 의미를 '성격장애나 지적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학습부진의 의미를 지적장애 군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이 다소 결여된 학생들을 의미하는 '경계선 지능학생'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교육심리학용어사전에서 '학습부진'이란 "성격, 태도, 학습동기, 학습습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학습결손, 부적절한 교수방법, 가정환경 등과 같은 개인의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3]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격장애나 지적기능 저하'와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같은 의미로 치환(置換)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학습부진'의 의미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85호)'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초기에는 현재 방과후학교 사업이나 Wee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사업과 Wee클래스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고유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1995년 5·31교육개혁을 출발점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453,391개의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국 99.7%의 학교에서 62.1%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14].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수행하던 학습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Wee사업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6,281개 클래스, 195개 센터, 15개 가정형 Wee, 12개 스쿨에서 다양한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정책 수행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에 의해 시도교육청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지 못한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이 부족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정체성 위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교육복지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방과후학교와 Wee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그동안의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취약계층 학생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들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결핍된 욕구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심리, 정서, 문화, 경제적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나 Wee사업을 경쟁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의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다[15].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15]를 지정운영 하여 체계적인 현황파악, 연구지원, 전문성 신장, 네트워크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거를 학습부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시급히 개정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학생', '학업 중단 학생' 이외에도 교육심리학용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결손, 부적절한 교수방법, 가정환경 등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

References

- [1] Lee, Soo jeon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licy of 'Priority-Zone Investment for Education Welfare'. (2016), Vol. 16, No. 2, pp. 1141-1159.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Plan white pap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2008)
- [3] Ryu, Bangran, Kim, Junyeop, Song, Hye-Jeong, Kim, Jin-Kyung. The Effect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 on Enhancing Self-Esteem and Mitigat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3), Vol. 14, No. 3, pp. 59-83.
- [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201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11)
- [5] <http://www.law.go.kr/>, March 1 (2017).
- [6] Cho, Kum Ju,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restructuring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 Vol. 21, No. 2, pp. 491-513.
- [7] Ju, Seok Ji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 Focusing o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in Pusan, Social Science Research. (2017), Vol. 33, No. 1, pp. 107-129.
- [8] Kim, Min hee,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at School,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12), Vol. 20, No. 3, pp. 169-194.
- [9] Kim, Kyung Ae, Study on promotion policy of site-centered autonomous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11)
- [10] <http://www.eduinfo.go.kr/portal/open/openData/dataSetPage.do>, March 1 (2017).
- [11] <http://kess.kedi.re.kr/index>, March 1 (2017).
- [12] Lee, kwang hyun, Study on the Methods of Finance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1), Vol. 20, No. 1, pp. 1-24.
- [13] Institute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Hanyang University, Seoul (2017)
- [14]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Glossary of educational psychology, Hakjisa, seoul (2000)
- [15] <http://www.moe.go.kr/>, March 1 (2017).